신학과 철학

제38호 2021 · 봄

# 수도회 '총회의 권한'에 관한 연구

김현조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 연구논문 □

# 수도회 ‘총회의 권한’에 관한 연구

김현조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조교수

서론
1. 역사 속 총회의 권한
   1.1 수도승 전통
   1.2 탁발수도회
   1.3 16세기 이후 수도회들
2. 보편법 입법과정
   2.1 1917년 법전과 그 이후
   2.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 『거룩한 교회』 및 수도회성 훈령 『쇄신의 문제』
   2.3 1983년 법전 입법과정
3. 현행법에 따른 일반적인 총회 권한
   3.1 일반적인 총회 권한과 한계
   3.2 총원장과 총회
4. 총회의 구체적 권한
   4.1 최고 대표기구로써 권한
   4.2 회의 최고 통치기구
   4.3 선택적으로 총회의 권한에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 현안들
5. 수도회들의 고유법에 나타난 총회 권한의 특징
   5.1 성좌설립수도회
   5.2 교구설립수도회
   5.3 회들의 고유법에 관한 평가
   5.4 고유법 입법을 위한 제언
결론

## 서론

수도회의 총회는 회(會)를 대표하여 세습자산을 수호(확인)하고 이에 따른 쇄신을 촉진하며 총원장 선출, 중요 업무 처리, 입법 등의 최고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그 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수도회 회헌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1] 총회의 권한은 보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의 회헌에 규정하도록 열어두었다.

이에 수도회들과 그 회원들은 총회의 권한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수도회의 성격에 맞도록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입법하고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들은 총회의 권한에 관한 종류와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와 입법 및 적용은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공동체의 복음화 목표, 구조, 형태 및 방법을 과감하게 재고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도[2]를 자기화하는 가장 적합하고 실제적인 방법일 것이다. 총회는 회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회의 가장 큰 권한을 지닌 합의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총회의 권한에 관한 이해와 입법을 돕고자 연구될 것이다. 순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수도회들이 가졌던 총회의 권한들과 보편법 입법과정에서 설정된 총회의 권한 및 입법 취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시기의 교회 문헌에 제시된 것과 이어서 현행법 규정에 따라 학자들이 제시하는 총회의 권한을 구분하여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수도회들의 고유법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만을 간추려서 살펴볼 것이다.[3]

---

1) 『교회법전』 제631조 제1-2항.

2)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2013),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33항.

3) 2020년까지 수도회의 총회를 주제로 다룬 국내 논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외국 논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은 주로 총회의 역사와 법제사를 총체적으로 다루거나 총회의 본성, 총회의 통보 및 소집, 총회의 진행, 총회와 평의회의 비교, 특정 수도회의 총회에 관한 것 등이다. Giuseppe Scarvaglieri, *Il Capitolo generale(Preparazione Celebrazione Attuazione)*, (Milano: Àcora, 2002); A. Sanna, *Il capitolo conventuale, (*Roma: Curia generale OFMConv., 1978); Filippo Iannone, *IL Capitolo generale(Saggio Storico-Giuridico)*, (Roma: Edizioni Dehoniane, 1998); A. Peinador, “Capitula et Consilia in regimine religiosorum. Observationes pastorales”, in *Commentarium pro Religiosis* 46(1965) 345-355; P.L. Nava, *L’evento capitolare. Dall’indizione per la convocazione alla ricezione*, (Roma: Centro Studi USMI, 1997); L. Gutierrez, “De natura juridica Capituli generalis specialis religiosorum”, in *Commentarium pro Religiosis* 48(1967) 241-258; U. Berlière, “le Chapitres généreaux de l’ordre de Saint Benoit avant le IV Concile de Latran (1215)”, in *Revue Bénedectine* 8(1981) 255-264; S. Ara, “Los capitulos provinciales de renovaciòn y el derecho del los Hermanos Menores Capuchinos”, in *Estudios franciscanos* 77(1976) 253-267; S.M. Alonso, “Qué es un Capitulo general”, in *Vida Religiosa* 50-31(1981) 74-80.

## 1. 역사 속 총회의 권한[4)]

### 1.1 수도승 전통

수도회 역사에서 회의(capitolo)는 8세기 베네딕토 수도회의 전통에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성무일도(officio divino) 기도를 함께하는 것이었다. 점차 규칙에 비추어 삶을 점검하는 모임이 되었고, 12세기 이후 회의(capitolo)에 '총(generale)'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삶의 규율을 확인하는 통치기구로 변모한다. 여기서 장상들은 그들이 행한 경영과 관리에 관해 보고하고 심사받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이후 교체 또는 제명될 수도 있었다.[5)] 한편 회의는 회원들 간에 과실을 따지거나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하였다.[6)] 이러한 총회가 합의체적 통치의 최고 기구로 자리잡게 된 것은 스테파노 하딩(Stefano Harding)의 '사랑의 헌장(Charta Caritatis)'[7)]의 입법을 통해서이다. 총회는 수도회의 최고 권한 기구가 되고[8)] 총회에서 불목으로 갈리고 의견이 분분할 때 아빠스와 평의회 및 더 적합한 이들이 함께 판결을 내리는 형태도 등장하였다.[9)] 이러한 시토회의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통치 권한을 총회가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10)] 1203년 이후 교황들은 총회를 통해 수도회들을 개혁하고 쇄신하려 하였다.[11)] 그리고 13세기부터 교황들은 총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

4) 본고에서는 총회의 제도적 특징이 드러나는 8세기, 12세기, 14세기, 16세기,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다룬다.

5)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25-27.

6) P. Ladeuze, *Etude sur le cénobitisme pakhomien, pendant le IV siècle et la première moitié du V,* (Paris: Paulin Laudeuze, 2018), p. 287을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27에서 재인용.

7) 1112년 베르나르도(1090-1153)와 그의 동료들은 베네딕토의 규칙의 해석을 통해 시토회를 설립하고 1118년 시토회 아빠스 스테판 하딩(Stefano Harding)은 『사랑의 헌장』(*Carta caritatis)*이라 불리는 규칙서를 작성한다. Priamo Etzi, *Attività di governo e prassi della consultazione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una lettura dei canoni 627 e 12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Pontificium Athenaeum Antonianum, 2001), 27. 이 규칙서는 수도승들의 대표들이 총회에 참여하는 절차를 다루고 여기서 아빠스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발하는 것, 총회 대체 장소 등도 다루면서 총회를 통한 합의체적 통치의 면모를 담고 있다.

8) U. Berliere, "Les origines de Citeaux", in R.H.E. v. I (1900) 456을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29에서 재인용.

9) 그 내용은 사랑의 헌장 3장 "총회의 구성과 권위 그리고 형태에 대하여"를 참조할 수 있다. Stephanus Harding, Carta Caritatis, in Constitutiones Sacri Ordinis Cisterciensis,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34, 8을 Etzi, *Attività di governo e prassi della consultazione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27-28에서 재인용.

10) 그 증거로 12세기 시토회의 자극을 받은 정규 참사회(canonici regolari)가 지역 회의의 연례 모임을 개최했고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갖는 정규 참사회 회의가 제4차 라떼란 공의회(1215)에 규정된 것에서 확인된다.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62.

자주 개입하였다.[12] 이상과 같이 수도승 전통에서 총회는 초기 사법권과 심사권이 포함되고 이후 입법권과 행정권도 포함되는 발전의 양상을 보인다. 또한, 교황들을 통해 회를 쇄신하는 수단이 되면서 총회의 식별권과 대표권이 암시된다.

### 1.2 탁발수도회[13]

사도직 중심의 탁발수도회들의 등장과 함께 총회의 권한은 크게 달라진다. 장상들은 새 사업을 시작하고, 변경하기 위해 총회라는 모임이 필요했다.[14] 1220년에 도미니코회는 회의를 총회와 관구총회로 구분하여 매년 개최하였다.[15] 여기서 "고유한 총회는 교황 다음으로 위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16] 심지어 총회는 대 사부(maestro generale)의 소집 없이 모일 수 있고, 그를 폐위시킬 수 있는 절대적 권한도 갖는다. 그리고 1220년에서 1227년까지 개최된 회의에서 회헌의 새로운 조항 입법과 수정을 위한 회의의 필요성을 규정함으로써 회의에 입법권도 포함되었다.[17] 그러나 점차 회의들의 권한은 대 사부 혹은 행정부로 넘어갔다. 이러한 중앙집권화로 인해 총회에 회원들의 참여는 감소했고, 총회는 회헌의 수정을 제안하거나 선거만 하는 것으로 권한이 축소되기도 하였다.[18] 다만 총회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흔적은 양성의 문제에 남아있었다.[19] 회의 중 사법권 행사

---

11) 교황 이노첸시오 3세(Innocentius PP. III)는 방문자를 지정하여 각 수도승원의 쇄신을 위해 회의를 자신에게 종속시키기도 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Gregorius PP. IX) 역시 총회를 통해 회들을 개혁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32-34.

12) 예를 들어, 교황 보니파시오 8세(Bonifacius PP. VIII)는 교황 니콜라오 4세(Nicholaus PP. IV)에 의해 이전에 승인된 회헌의 수정 임무를 1297년 클루니(Cluny) 수도회의 총회에 위임하였다. L. R. Misserey, "Chapitres de Religieux", in *Dictionnaire de droit canonique*, v. III, coll. 601을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38에서 재인용.

13) 탁발수도회는 13세기 유럽에서 생겨난 수도회들로 기존 정주 수도승 전통에서 사도직 중심으로 변화된 회들이다. 프란치스코회, 도미니크회, 카르멜회, 아우구스티노회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가장 큰 수도회였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를 다룬다.

14) Etzi, *Attività di governo e prassi della consultazione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29.

15) A.M. WALZ, *Compendium Historiae Ordinis Praedicatorum,* (Rome: Herder, 1930), 98-104를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36에서 재인용.

16) WALZ, *Compendium Historiae Ordinis Praedicatorum* 103을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36에서 재인용.

17) Ibid.

18) Velasio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ed., Mosca, Vincenzo,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385.

19) 1670년에 설교수도회 보조 수사인 청원자들이 제3회원의 복장으로 적어도 2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총회가 결정하였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bid., 265.

의 전통도 중세 도미니코회에서 드러나는데, 규칙 위반에 대한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 법정인 '과실책임 회의(capitolo delle colpe)'가 그것이다.[20]

프란치스코회에서는 특별히 심사와 선거의 권한을 총회가 가졌음을 보여준다. 즉, '봉사자'[21]가 해임되는 심사가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구총회에서는 관리(Custode)와 고문(Discreto)을 총회 대리인으로 선출하기도 하였다.[22] 더 나아가 1500년에 작성된 알렉산드리아 회헌에서 평의회 회원들 혹은 협조자들이 총봉사자로 선발되기 위해 총회의 동의권도 필요했던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1490년 이래로 3~4명의 결정자(Definitori)를 총회에서 선출한 기록도 있다.[23] 탁발수도회 전통에서 역시 총회는 회의 최고의 권위로 자리잡는다. 주로 사도직 업무에 결정권이 행사되고 심사권, 입법권, 선거권과 특히 사법권의 형태도 특징을 이루며 발전하였다.

### 1.3 16세기 이후 수도회들

16세기 이후 총회는 모든 수도회에서 마련한 통치기구가 되었고 보통 6년 정도마다 개최하여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였다. 이냐시오에 의해서 작성된 예수회 회헌에서 법제화된 '총연합(congregazione generale)'[24]은 성당참사회의 총장선출권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및 행정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수도회에서는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총회의 권한이 총장과 총행정부로 이동되었다. 이로써 회원들은 회의 통치의 참여에서 소외되고 불신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단순서원회들에서 평의회 회원과 총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지만, 회헌의 검토 등 근본적인 임무를 총회와 행정부가 함께 다루었다.[25] 1901년에 수도회성의 규범(Normae)에 따르면, 업무나 선거에

---

20) 이 회의는 죄책성 있는 형제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과실을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수도원장(Priore)을 통해 보속이 부여되는 일종의 공동체 전체의 회합으로 진행되었다. Pietro Lippini, *La vita quotidiana di un convento medievale(Gli ambienti, le regole, l'orario e le mansioni dei Frati Domenicani del tredicesimo secolo)*, (Bologna: Edizioni Studio Domenicano, 2003), 352.

21) 장상을 의미한다.

22) Constitutiones generales Narbonenses (a. 1260), Rubr. Xc XI, in BONAVENIURAE (S.), Opera Omnia, vol. VIII, Ad Claras Aquas, cd. PP. Collegii a S. Bonaventura, 1898, 461-463을 Etzi, *Attività di governo e prassi della consultazione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33에서 재인용.

23) Etzi, *Attività di governo e prassi della consultazione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34.

24) 이 모임은 총회(capitulum generale)와 이름은 다르지만, 오늘날의 다른 수도회의 총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관구의 성당 참사회장들(propositi)과 대리들 및 서원 선서자들 가운데 뽑힌 이들이 모여 총참사회장을 선출하였다.

서 총원장은 통상적 방법으로 그리고 총회는 비통상적 방법으로 회의 최고 권한을 행사한다.[26] 이 부분에서 총회의 권한이 선출총회와 안건총회로 구분되기도 하였다.[27] 16세기 이후 총회는 6년 정도의 주기로 모이면서 선거권을 포함하는 선출총회의 성격으로 드러나고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이 자리 잡지만, 점차 이러한 권한들이 행정부로 넘어가고 회원들의 통치 참여가 감소되면서 총회 권한이 약화되고 회의 통치에 불신이 쌓이기도 하였다.

## 2. 보편법 입법과정

### 2.1 1917년 법전과 그 이후

1917년 법전에서 총회에 관해 제50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장상과 회의(capitula)는 회헌과 일반법의 규정에 따라서 종속자들(subditos)에 대하여 지배권(potestatem dominativam)을 가진다. 또 면속성직자 수도회에 있어서는 외적 및 내적 법정에 관한 교회의 사법권을 갖는다."[28] 여기서 회의는 회헌과 공통법(diritto comune)에 따라 종속자들에 대한 지배권(potesta dominativa)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이 권력을 순명서원에서 오는 사적 권한으로 보는 학설도 있었지만,[29] 축성생활회의 권력은 사적일 수 없다는 이론이 일반화되었다.[30] 총회가 갖는 권한을 소극적 개념으로 묘사했던 점은 확

---

25)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41-44.

26)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385.

27) 이 문서의 매우 상세한 규범은 이후 사도좌에 의해 승인된 회헌의 조문(lettera nelle Costituzioni)에 적용되었으며, 1917년 법전의 공포가 있을 때까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Congregatio Episcoporum et Regularium, "Normae secundum quas S. Congregatio Episcoporum et Regularium procedere solet in approbandis novis institutis votorum simplicium", Typis S.C. de Propaganda Fide, Roma, 1901, nn. 205-223, 224-245.

28) "Superiores et Capitula, ad normam constitutionum et iuris communis, potestatem habent dominativam in subditos; in religione autem clericali exepta, habent iurisdictionem ecclesiasticam tam pro for interno, quam pro externo" D. Andrés Gutiérrez, ed., *Leges Ecclesiae*, vol. VII, (Roma: EDIURCLA, 1994), n. 5165, 9371.

29) 지배권은 가정 내에서 부모가 갖는 힘이라는 뜻이 있기에 일부 학설에서 이 권한을 작게 보기도 하였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순명 서원에서 비롯된 사적 권력의 문제로 보고, 어떤 이들은 공동체나 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권력의 문제라고 보았다.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32-233.

30) 왜냐하면, 권력의 본질은 그 단체의 본질에 의해 특징짓기 때문이다. 만약 단체가 공적이라면 권력은

실하다. 그리고 회원들의 일치와 참여에서 발생하는 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과 참여의 원리도 제시되지 않는다. 선출문제도 총회에서 다루지 않고 명칭도 간단히 '회의들(capitula)'이라 언급한다. 따라서 실제로 1917년 법전에서 총회는 부정적 경향으로 기울었던 바로 이전 역사를 반복하며, 현행법에 비하면 그 권한이 크게 축소되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501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회헌의 변경이 총회에서 가능한지 등의 질문이 제기되고 수도회성은 이 권한을 총회에 분명하게 부여한다.[31] 또한, 그 변경이 시급한 경우에만 다음 총회에서 그 회헌의 개정에 관해 다룬다는 조건으로 총회의 회헌 개정 권한을 거치지 않고 개정되는 가능성도 허용한다.[32]

### 2.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거룩한 교회』및 수도회성 훈령『쇄신의 문제』

앞서 살펴본 역사에서 '교황들이 수도회 쇄신을 총회에 기대했던 것'[33]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총회에 회의 쇄신을 주문한다. 수도생활 쇄신에 관한 교령은 수도회의 행정부가 아닌 구성원의 협력으로 쇄신을 이끌도록 총회에 의미와 권한을 부여한다.[34] 이러한 총회의 권한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책임성과 대표성의 원리에서 유래한다.[35]

---

공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는 행정 관할권과 동등한 공적 지배권으로 다뤄져야 한다. 아르카디오(Arcadio)의 학설은 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고, 관할권(potestà di giurisdizione)에 대한 1917년 법전 제197조, 제199조, 제206-209조가 수도회 장상들의 지배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에 1952년 3월 26일 교황청 교회법 해석 위원회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 답변은 현재 제596조 제3항에 확실히 성문화되었다. Ibid., 233.

31) 회헌이 총회에서 토론되고 승인되지 않으면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46.

32) "성성에서 제시한 것들의 모든 변경은 일반규범처럼 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다. 만일 회의 총회 개최 이전에 변경이 시급한 것은 다가오는 총회의 판단에 예속되는 조건에서 성성이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OCHOA, *Leges Ecclesiae post Codicem iuris canonici editas*, vol. II (anni 1942-1958), n. 2306. col. 3088을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46-47에서 재인용.

33) 교황 이노첸시오 3세(Innocentius PP. III)를 시작으로 교황들이 수도회를 쇄신하는 도구로 총회를 이용했던 것을 일컫는다.

34) "회의 모든 구성원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쇄신과 진정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적응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과 그에 관한 법을 규정하는 것은 그 중명의 신중하고 충분한 시기를 정하는 것 역시 관할권이 특별히 총회에 속하는 과제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생활 교령』(Perfectae Caritatis, 1965) 4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35) 이러한 원리가 담기기까지 공의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이러한 개혁의 커다란 윤곽이 회의 민주화로 모든 회원의 의견이 청취되는 것이고 중앙 집권적인 색채에서 분권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는 총회의 권한을 그 어떤 문헌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회헌의 일부 규정을 변경하고 회의 쇄신과 적응을 주도할 권한이 총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36] 그리고 교황은 실제 총회 소집을 명함으로써[37] 총회의 권한을 통해 회들을 쇄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수도회성의 1969년 1월 6일 훈령 『쇄신의 문제』는 수련기 이전 청원기와 같은 예비 시험기의 성격과 기간을 결정할 의결권을 총회에 부여하기도 한다.[38]

결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친교로 이해되는 변화된 교회관에서 교회는, 이전처럼 기존에 권위가 종속자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형태가 강조되지 않고 모든 교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주인이 되는 공동책임성이 강조된다.[39] 수도회 역시 모든 회원의 참여를 통한 공동책임성이 강조되고 총회의 대표성이 강조되면서 총회를 통해 수도회 쇄신도 제기되었다.

### 2.3 1983년 법전 입법과정

총회를 다루는 1983년 법전 제631조의 입법과정에서 전안 제16조는 카리스마를 식별하고 보호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식별의 권한까지 총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40] 어떤 위원들은 총회가 '최고 권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으나, 다수의 위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카리스마에 관해 "추가로 결정하는(ulterius determinare)" 권

---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교회의 지도하에 회의 쇄신을 이루는 주체가 회 자신이고 회원 전체라는 공동책임성에 있다. 대표성의 원리 반영도 그 기저에 장상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회원이 대표자로 구성되는 변화를 담고 있다. H.V. 스트라렌 외, 현석호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해설총서』 5,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459-461.

36) "수도 생활을 쇄신하고 적응시키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그 수도회 자체이다. 수도회는 주로 총회를 통해서…이러한 일을 수행한다. 총회의 임무는 단순히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성 생활과 사도직 생활을 증진함으로써 완성된다." 바오로6세, 『거룩한 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II. 1항. "이 총회는 수도회의 목적, 본질, 성격을 보존하는 한, 회헌의 일부 규정을…변경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규정의 변경이 관습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경우에 따라 성좌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 『거룩한 교회』 II. 6항.

37) "각 수도회의 쇄신과 적응을 촉진하고자 2년이나 길어도 3년 안에는 통상적인 혹은 비통상적인 특별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거룩한 교회』 II. 3항.

38) 수도회성, 『쇄신의 문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12항.

3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10-14항; 발터 카스퍼, 「친교인 교회(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친교 개념에 대한 성찰)」, 주락권 역, 『신학전망』, 164(2009, 3), 189-192.

40) 몬시뇰 차관(Mons. Segretario)은 제1항에서 총회가 카리스마를 '확인하는 것(tueri)'만이 아니라 이 뒤에 '증진하는 것'을 첨가하는 것으로 총회의 권위를 한층 더 확대하려 하였다. 그리고 "규범들을 전해주는 것" 앞에 "모든 이가 순종해야 할(quibus omnes parere tenentur)"을 첨가해 총회가 모든 이의 구속력을 갖는 중대한 입법 권한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s canonici recognoscendo, *Communicationes* v.12, 1980, 170.

한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카리스마를 바꾸는 것은 성좌의 동의가 요구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리스마를 확인하고(tueri) 그것에 따라 쇄신을 촉진하며"로 변경되었다. 한편 어떤 위원은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에 기초하여 도입된 것 즉, "회의 영적이고 사도적 생기를 증진하는 것(Instituti spiritualem et apostolicam vitalitatem promovere)"을 첨가하기를 원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1]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중요한 의견이었다. 왜냐하면, 수도회들이 총회에서 이러한 구체적 주제를 숙고하고 논의하며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명문 규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안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1917년 법전 제501조에 비해 총회의 권한이 한층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제2항은 회원들이 총회에 제안과 의견을 보낼 권한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에 관해 응답해야 하는 총회의 권한이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42] 제3항은 총회가 사업을 다루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순서를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두 가지에 관한 권한이 총회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43] 이밖에 총회의 권위와 관계된 구성과 범위를 회헌에서만 규정할지 혹은 고유법 전체에서 규정할지 토의한 후 회헌에 규정되도록 하여 총회 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44] 이러한 입법의 논의 과정 후 마침내 1983년 법전 제631조에 총회의 권한이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설정된다.

> "제1항: 회헌 규범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총회는 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 안에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총회의 주요한 소임은, 제578조에 언급된 그 회의 세습 재산을 확인하고(tueri)[45] 그것에 따른 적당한 쇄신을 촉진하며 총

41) Ibid., 171.

42) 전안 제16조 제2항: "어느 회든지 고유법에 정해진 규범에 따라 하위등급의 회의(관구, 지구 등)와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어느 회원이든지(quilibet sodalis) 자신의 제안들과 충고들(suggestiones)을 총회에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Ibid., 170. 몬시뇰 차관의 제안에 따라 마침내 다음의 내용이 승인된다. "§2. 회의의 구성과 범위가 회헌에 정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고유법은 회의의 거행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순서, 특별히 선출과 안건의 처리 방식(rerum agendarum rationes)까지 정해야 한다." Ibid., 171.

43) 전안 제16조 제3항: "각 회에서 고유법은 사업에 대해 다뤄야 할 때와 선거에 대해서 완수해야 할 때 총회 거행의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회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규범의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 모든 회원은 총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어떠한 남용과 특히 선거권의 처리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것만큼 자신을 위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Ibid. 이후 제3항은 다수로부터(8명 이상의 동의)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다. "3항: 고유법에 정해진 규범들에 따라 관구와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회원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optata sua)과 제안들을 총회에 자유로이 보낼 수 있다." Ibid., 172.

44) Ibid., 171-173.

원장을 선출하고 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며 모든 이들이 순종해야 할 규범을 반포하는 것이다." "제2항: 회의의 조직과 권력의 범위가 회헌에 규정되어야 한다. 고유법이 회의의 개최 중에 지켜야 될 규칙, 특히 선거와 안건 처리 방식에 관계되는 것을 더 자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3항: 관구들이나 지역 공동체들뿐 아니라 어느 회원이라도 자기의 소원과 제안을 고유법에 정하여진 규범에 따라 총회에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다."[46]

이렇게 총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 권위(auctoritas)를 가지고 회 전체를 대표하며 그 회의 세습 재산을 수호하고 그것에 따른 적당한 쇄신을 촉진한다. 또한 총원장을 선출하고 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며 모든 이들이 순종해야 할 규범을 반포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회헌 규범에 따른 것이다. 이 회헌 입법은 총회에서 이뤄지기에, 결론적으로 총회가 보편법에 준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총회의 권위는 제2항에 따라 어떠한 권력(potestas)을 갖게 되는지 회헌에 구체화 되어야 한다.

## 3. 현행법에 따른 일반적인 총회 권한

### 3.1 일반적인 총회 권한과 한계

"회들의 장상들과 회의들은 회원들에 대하여 보편법과 회헌으로 규정된 권력을 가진다"(제596조 제1항). 그리고 "회헌 규범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총회는 회 전체를 대표"(제631조 제1항)한다. 이러한 보편법 규정과 회의 고유법을 고려한 데빠올리스는 총회의 권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서술한다. "총회는 회의 내부에서 총회보다 높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권한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는 총원장의 장상이기도 하다."[47] 그렇다고 해도 총회가 절대적이고 제한 없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

45) 이 "세습자산을 수호하고(tueri)"의 한국어 법전 번역은 잘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는 'tueri'에 대한 다른 뜻 "확인하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 연구소, 「tueror」, 『라틴-한글 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973. 오히려 확인하여 세습자산이 잘 이어왔다면 뒤의 문장인 "그것(세습자산)에 따라" 적당한 쇄신을 촉진하게(promovere)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호하는 역할에만 고정되면 잘못된 세습자산을 고수하는 데에만 중점을 둘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점검의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사실 바오로 6세는 자의 교서를 통해 회들이 총회를 통해 쇄신과 적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6) 『교회법전』 제631조 제1-3항.

47)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392.

며,[48] 그 권한은 회마다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49] 그래도 보편법에 정해져 있는 총회의 최상권과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은 변경할 수 없다.[50] 이 권한은 총회 동안 회의 기본 회헌을 통해 회원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법을 통해서 회의 비통상적 통치를 합의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발생한다.[51]

### 3.2 총원장과 총회

법전에서 장상과 회의들은 권력의 능동적 주체로 나타난다. 장상들 가운데 총원장이 그리고 회의들 가운데 총회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두 권력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보통 총원장에 속하는 특정 사안들이 비통상적으로 행사되어도 무방하다면 총회에 유보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총회로 넘어가는 문제들은 총원장이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총회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이다.[52] 총회는 진행 중에 총원장의 권한을 흡수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53] 오히려 선출된 총원장이 총회위원이 아닐 경우 그가 총회에 도착할 때까지 회의가 중단된다.[54] 한편 다른 회원 혹은 외부 인사가 총회를 주재하게 하면서, 총원장으로 하여금 총회를 주도하지 못하게 총회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총회 중에 총원장이 갖는 권한과 위치에 관한 고유한 규정이 없고 그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다면 총회 중에도 총원장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55] 다만 그의 통치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총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56] 총회는 총회가 작동할 때에만 정규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만,[57] 이러한 권한은 장상들의 권한보다 훨씬 확장된다.[58] 그 이유는 우

---

48) Elio Gambari, *I Religiosi nel Codice*, (Milano: Àncora, 1986), 187.

49) Jean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Àncora, 1989), 259-260.

50) 도밍고 안드레스 구티에레스, 『봉헌축성생활회』 제1권, 한영만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208.

51) Jordan Hite·Sharon Holland·Daniel 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85), 90.

52) Gambari, *I Religiosi nel Codice*, 187.

53) Ibid., 187. 총회 동안, 총원장은 평의회의 도움을 받아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는 의장의 권한을 갖는 총원장의 통상적 권한을 손상하거나 그것과 충돌하지 않는다. Hite· Holland·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90. 이것은 수도회 고유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사랑의 선교 수사회, 『회헌과 규칙서』, 2003. 제17.4조.

54)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261-263.

55) Ibid., 260.

56) Francis G. Morrisey, “Capitulo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1587.

선, 총회의 결정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총회 이후에도 총원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기에 그렇다. 이 의무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필자가 이렇게 두 가지 의무로 보는 이유는 첫째, 신임 총원장이 스스로 자신을 선출한 총회의 다른 결정들도 직무 수행 중에 이행하려고 스스로 부과하는 책임감에 따라 윤리적 성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전 총회의 결정 사항을 총원장이 다음 총회에 보고하고 심사와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회들에서 총회 결정 이행의 의무는 법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총회 권한이 장상 권한보다 확장되는 이유는 총원장의 선출이 총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스스로 사임할 수도 있다. 총회 기간 외에 사임하기를 원하면 성좌에 이유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릴 수도 있다.[59] 총원장이 종신직인 회에서 더 통치할 수 없는 경우, 총원장이 사망까지 총평의회나 총회가 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0] 총원장 외의 장상들은 제625조 제3항에 따라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급 장상의 추인이 필요하다.[61]

## 4. 총회의 구체적 권한

### 4.1 최고 대표기구로써 권한

#### 4.1.1 대표권

총회는 회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 대표성을 총회가 주는 효과 면에서 바라

57) 어쨌든 교회법전에서 엄밀히 따지면 '비정규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F. Iannone, "Potestà del Capitolo generale (cann. 596 e 631, §1)", in CpR (1987), 77-97, 233-244를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392에서 재인용.

58) Elio Gambari, *Religious Life,* (Boston: the Daughters of St. Paul, 1986), 535.

59) Canon Law Digest, ed. T. Bouscaren and J. O'Connor, v. 8, (Chicago, CLSA, 1991), 356을 Hite·Holland·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80에서 재인용. 총회 중에 선출된 직무자는 총회에서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도회가 있다. 아우구스티노수도회, 2013년 184차 정기총회 개정관, 289조. 물론 임기 중에 총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거나 그의 불법 행위를 시정 하거나, 그를 해임시키거나, 그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고유법으로 정할 수 있다(제624조 제3항, 제631조 제1항) 정진석, 『교회법 해설』2,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20), 839.

60) 이것은 사임한 전임자가 아직 생존하는 동안 새로운 선거를 하여 후임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233-234.

61) 『교회법전』 제625조 제3항.

보는 이[62]도 있고 내적인 일치와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 교회와 세상으로 확장시키며 바라보는 이[63] 도 있다. 총회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대표권이 더 크게 확장되고[64] 통치에 불신이 싹트지 않는다. 또한 이 대표권은 법적 대표성의 성격에서뿐만 아니라, 총회 위원의 양과 질, 임명 절차 그리고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5] 베이어에 의하면 이 대표성을 위해 총회 위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회의 카리스마를 잘 알고 그것을 보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일치를 도모하고 기도로 조성된 친교의 정신이다.[66] 각 기구도 준비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조치를 통해 그리고 총회 중에는 각자의 역할을 통해 이 대표권에 참여한다.[67] 총회 위원들은 단지 자신의 활동 분야나 지역 혹은 다른 회원들의 대변인이 아니다. 대리로 참여할지라도, 그들의 신념에 따라, 회 전체의 발전과 일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68] 교회를 친교로 바라보는 변화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관을 상기한다면 이렇게 친교 안에서 참여와 공동책임성을 실현하는 것은 총회의 대표 권한의 근원적 힘이 된다.

### 4.1.2 제안권

보통 제안권은 개인과 단체 기구의 권한으로 분류된다. 보편법은 고유법에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관구들, 지역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에게 소원하고 제안할 권한을 허용한다.[69] 도밍고 안드레스는 제안권이 성공적인 총회를 준비하는 권한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정보 보충 및 수정 그리고 표현의 출구로, 회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70] 제안권의 행사는 정해진 것을 넘어서는 사안과 방식에 대해서

---

62) 스카르발리에리(Scarvaglieri)에게 총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각 회가 행하는 존재와 사명을 더 유효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회를 대표하는 총회는 교회 공동체에 봉사와 인간 사회의 이익을 위해 내적, 운영적 활력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이어진다. Scarvaglieri, *Il Capitolo generale (Preparazione Celebrazione Attuazione*, 9.

63) 쁘로니오(Pironio) 추기경은 총회를 주님이 현존하는 교회의 행사로 보고 일치의 축제 차원에서 총회의 대표성을 상기시킨다. L'Osservatore Romano 116 (1976. 8. 25.) 195, 2를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56에서 재인용.

64) 『교회법전』 제631조 제1항.

65) Gambari, *I Religiosi nel Codice*, 188.

66)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256-257.

67) Gambari, *I Religiosi nel Codice*, 188.

68) Ibid.; 정진석, 『교회법 해설』 2, 838.

69) 『교회법전』 제631조 제3항.

는 제한된다.[71] 이러한 제안권은 총회 자체가 갖는 제안권이라기보다 총회에 대한 회원들 혹은 기구들이 갖는 제안권이다. 이러한 제안권에 대한 총회의 의무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인다.[72] 한편 총회 자체가 갖는 제안권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총회는 복음적 권고, 특히 청빈의 정신과 실천을 성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증진하도록 회에 제안할 수 있다.[73] 교회도 총회가 회의 쇄신과 적응을 위한 실험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74]

### 4.1.3 식별권

앞서 살펴본 총회의 권한에 관한 입법과정의 초안에 사용된 "세습자산 수호(tueri)"에서 라틴어 동사 'tueri'는 세습자산을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찰하고' '확인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실 교회는 수도회의 생생한 존재의 유지와 교회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세습자산의 '수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의 모습과 세습자산을 비교해 보는 '확인'과 '식별'의 과정을 강조한다. 수도회는 설립자와 전통으로 일궈낸 세습자산이라는 거울을 자주 닦고 들여다보는 관찰과 확인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수도회의 쇄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75] 이러한 총회의 식별의 권한을 통해 일부 회들은 자신들의 삶이나 설립자의 정신을 재발견하는 식별의 권한을 총회에 구체적으로 부과한다.[76]

---

70) 안드레스, 『봉헌축성생활회』, 211.

71) Ibid.

72) 데빠올리스는 법전이 소원과 제안을 보낼 권리를 부여하지만, 총회가 그에 대해 논의하고 응답할 의무나 권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총회가 이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395. 반면 안드레스는 제안권의 행사가 총회에서 일종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총회 관계자들은 제안에 책임을 지고 응답해야 한다고 본다. 즉, 총회에 제안할 권리가 규정된 자체가 그에 대해 대답할 할 의무를 수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안드레스, 『봉헌축성생활회』, 211-212.

73) 『거룩한 교회』 23항. 그밖에도 총회는 자신의 대표성으로 교회의 다른 단체에 유익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1917년 법전에서 수도회 회의(capitula)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1917년 교회법전 제2332조)을 고려한다면 총회가 교회의 법인들이나 상급권위에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권한이 배제되지 않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리고 수도회 고유법에서도 실제로 회의가 다른 회의에 제안을 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성가소비녀회, 『성가의 빛』, 2013, 제119조.

74) "효과적인 쇄신과 올바른 적응은 그 단체의 모든 회원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충분하고 신중한 실험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오로지 관할 권위, 특히 총회의 권한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생활교령』,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4항.

75)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는 이러한 총회의 식별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 볼 수 있다. 『거룩한 교회』 2항, 3항; 요한 바오로 2세, 『축성생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42항.

76) 예수성심시녀회, 『회헌(시안)』, 2020, 제143조, 제124조;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회헌과 회칙』, 1985, 제118조.

### 4.1.4 의결권

총회는 또한 의결하는 기능과 함께 회에서 회헌의 규범에 따라 최고 권위를 행사하는 합의체적 통치 기구이다.[77] 보편법이 총회에 맡긴 의결하는 기능에 대한 근거는 제586조에 인정된 자치권의 결과이다.[78] 교회문헌에 총회가 의결 권한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발견된다.[79] 이렇게 교회는 수도회가 중요 사안에 대해 총회의 의결권을 사용하기를 권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총회의 의결권으로 수도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80] 구체적 절차에서 의결권은 교회법 제119조 제2호에 따라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의 절대다수가 찬성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81]

### 4.1.5 '통제권(심사권)'[82]

총회는 행정부의 통치와 펼친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다.[83]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총원장이 작성한 총회 제출 보고서의 논의 및 승인과 회의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이루어진다.[84] 교회는 총회의 통제권을 활용하기도 한다.[85] 사실

---

77) 루이지 사바레세, 『가톨릭 교회법전 입문』, 김우중·안세환·한영만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 교회법연구소, 2018(2)), 105.

78) 안드레스, 『봉헌축성생활회』, 201.

79) 즉, 교회법 제648조 제2항에 규정된 수도자들의 수련원 밖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사도직 실습 기간을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의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회헌에 고정적으로 정할 수 있다. 『쇄신의 문제』 23항.

80) 이것은 평범한 경영의 진행으로도 가능하고 특별한 쇄신의 활력을 위한 결정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Scarvaglieri, *Il Capitolo generale(Preparazione Celebrazione Attuazione*), 11. 이 합의체적 의결권은 코도르니우(Codorniu)에 의하면 총회의 결정을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 그리고 의결권이 갖는 합의체적 과정에서 기술적, 기능적 측면이 다듬어지면서 결정 사항의 방법론적, 실용적 측면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M. Codorniu, "Regolamenti dei capitoli generali", in *Vita Consacrata* 15 (1979/3), 207-223을 Scarvaglieri, *Il Capitolo generale(Preparazione Celebrazione Attuazione*), 11에서 재인용.

81) 『교회법전』 제119조 제2호.

82) 두 권한은 효과 면에서 비슷하다고 보기에 본고에서는 혼용한다.

83) 총회를 통해 총원 차원(예: 총비서, 총경리, 총 촉진자 등등)의 직무자들을 선출하는 회에서 이러한 업무 심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심사는 선거를 통해 간접적 통제가 된다. 그런데 총회에서 그들을 선출하게 될 때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직무자의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직무에 대한 노력 없이 정치적 관계로 흐르는지 이다.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115-116.

84) Ibid., 116. 예를 들면 교회법 제636조에 따라 총경리는 총원장과 평의회에뿐만 아니라 총회에도 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Morrisey, "Capitulos",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1601.

수도회의 통치와 회원들의 삶은 설립 사명과 교회의 요구에 더 잘 응답하도록 여러 분야에서 총회에 의해 심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86]

### 4.1.6 선거권

교회는 총회가 선거를 통해 수도회의 총원장을 선출할 권한을 보장한다.[87] 회에 따라 평의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자도 총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선거권을 확장한다.[88] 한편 교회법 제177조가 선출자의 8일 이내의 당선 수락 여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회헌에 따라 이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89] 또한 어떤 회는 선출에 교회법적 장애가 있는 이들에 대해 천거 규정[90]을 도입해 총회의 선거 권한을 확장하기도 한다.[91] 선거의 구체적 절차는 회의 고유법에 없다면 교회법 제119조 제1호에 따라 진행된다.[92]

---

85) 수도회와 재속회성은 교회법 제704조와 제592조 제1항에 언급된 사도좌에 보내야 하는 회의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에 대해 총회의 심사권 혹은 통제권을 부여한다. 즉, 총원장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한 이후에 성청으로 보내도록 결정하였다. SCRIS, Relazione periodica alla Santa Sede, en "Informationes SCRIS" 14(1988), 179-182: cartas del 2.1.88 a los Superiores generales de los IVC y SVA를 Morrisey, "Capitulos",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1800에서 재인용.

86) Hite·Holland·Ward, *A Handbook on Canons 573-746*, 77.

87) 『교회법전』 제631조 제1항.

88) 작은 형제회, 『작은형제들의 수도규칙·회헌·총규정』, 2015, 회헌 7장 제134조; 글라렛선교수도회, 『규칙』, 1999, 제348조.

89) 이러한 예는 두 가지인데 첫째, 특정법(일부 축성 생활회의 회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선거를 수락할 의무를 부여했다. F.X. WERNZ-P. VIDAL, *Ius canonicum, II, 3(a)ed., Romae,* 1943, 327을 Jesús Miñambres, "Elecció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1014-1015에서 재인용. 실제로 일부 수도회에서는 총회가 당선된 총원장의 수락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거나 총회만의 규정 방식에 따라 당선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 글라렛선교수도회, 『규칙』, 제513-514조; 사랑의 선교 수사회, 『회헌과 규칙서』, 제17.7조. 둘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헌장(Universi Dominici gregis)에서 로마 교황직에 선출된 사람이 콘클라베 회의에서 이루어진 선거를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Ioannes Paulus II, Constitutio apostolica, "Universi Domini Gregis", Feb. 22, 1996, n. 86을 Miñambres, "Elecció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 1015에서 재인용.

90) 『교회법전』 제180-183조.

91) 즉, 교회법 제624조에 따라 총원장 직무가 계속되는 3선은 제한되지만, 필요한 경우 천거제도를 통해 무기한 재임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사랑의 선교 수사회, 『회헌과 규칙서』, 제17.9조. 상황에따라 천거가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다수로 미리 구성된 뻔한 천거나 무책임한 천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지침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Per Vino Nuovo Otri Nuovi, 201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9, 51항.

92) 교회법 제119조 제1호는 선거의 절차를 규정 한다. 이 절차에서 경합 끝에 득표수가 동일하면 연령의

### 4.2. 회의 최고 통치 기구

총회는 회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대표기구로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지만, 또한, 최고 통치 기구로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성좌설립성직수도회의 총회는 입법, 사법 및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최고 통치 기구의 면모를 취한다(제596조 제2항).[93]

#### 4.2.1 입법권

회헌의 입법과 수정의 권한은 총회의 특권이다.[94] 이는 보편법이 보장하지만,[95] 관할 권자의 승인이 요구된다.[96] 총회는 규범을 발행하면서 진정한 입법권을 갖는다. 이 구체적 입법권의 행사는 교회법 일반규범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97] 또한 법으로 규정된 범위에서 수정과 폐지도 가능하다.[98] 법률 혹은 입법 교령의 공포 역시 입법권의

---

선배를 당선자로 간주한다. 그런데 회에 따라 이 연령 선배 대신 서원 연차로 규정하기도 한다.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회헌 회칙』, 2017, 제101조. 이것이 오히려 수도회의 성격에 부합할 수 있다. 사실 총원장 후보자는 나이뿐만 아니라 종신 후 연차를 고유법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 전체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총원장의 적합성을 규정하는 취지가 이렇다면 선거에서도 역시 동률일 경우 수도회 경험을 좌우하는 서원 연차로 우위를 정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

93) 사바레세, 『가톨릭 교회법전 입문』, 105. 이 통치권은 교회법에 의해 성직자에게 국한되지만,(『교회법전』 제129조 제1항) 수도회에서는 성직자가 아닌 회원도 총회에 참가함으로써 그 권한에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Iannone, “Potestà del Capitolo generale”, 236.

94) 물론 교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이 권한을 총평의회에 부여하기도 하였다. 『거룩한 교회』 7항. 이후 수도회와 재속회성(SCRIS: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의 과거 영어식 표기)은 교령을 통해 총원장도 고유법에 흠결이 있다면, 합의체적으로 보완하여 총회 전까지 효력을 갖게 하고 총회가 소집되면 다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 규정이 회헌에 관한 것이면 교구설립수도회는 교구장에게 성좌설립수도회는 성좌에게 승인되어야 한다. Tomas Rincon-Perez, “Institutos de vida consagrada: normas comune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1438-1441.

95) 『교회법전』 제631조 제1항.

96)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261.

97) 교회의 최고권위(제135조 2항)에 의해 명백히 위임되지 않는 한 고유법 가운데 회헌 혹은 근본 규범에 관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도회들이 입법권을 자체로 행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입법 후 상위 권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규범들 (『교회법전』 제587조 4항), 일반집행교령(제31조), 일반입법교령(제29조), 훈령(제34조 제1항), 특전(제76조 제1항), 정관(제94조 3항) 혹은 총회나 비슷한 회의와 같은 집회(모임)를 위한 규칙(제95조 1항)에 대해서는 총회가 충만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Iannone, “Potestà del Capitolo generale”, 230-238. 여기에 덧붙여서 총회가 회에 도입된 관습도 승인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교회법전』 제23-28조.

98) 『교회법전』 제20-21조. 특별히 성좌설립성직수도회의 총회는 교계의 권한을 취하면서 제20조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법률을 폐지하고 개정하는 권한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 Javier Otaduy, “Leyes eclesiástica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 eds. Marzoa, Á.·Miras,

연장이라 할 수 있는데, 총회의 구성 요건에서 입법자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99] 특별히 긴급하고 그 총회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면 법의 공포는 총회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고기간은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교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한 달이며 공포일에 맞춰 계산된다.[100]

### 4.2.2 사법권

재판관들이나 합의제 재판부들이 가지는 사법권[101]은 성좌설립성직수도회에도 있다.[102] 다른 회들은 사법권이 없기에 총회에서 고유한 의미의 민사와 형사재판이 불가능하다.[103] 따라서 총회 동안 특별한 진행절차로 이 사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항상 행정적인 것이지 엄밀한 의미의 사법권 행사는 아니다.[104] 한편 형벌을 규정하는 입법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법권에 참여할 수는 있다.[105] 그리고 규범을 장려하고 화해를 조성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벌칙을 정할 수도 있다.[106]

---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400.

99) 『교회법전』 제8조 제2항.

100) Iannone, "Potestà del Capitolo generale", 238-239.

101) 『교회법전』 제135조 제3항.

102) 『교회법전』 제596조 제2항.

103) X. Ochoa, "Ordinatio Tribunalium Religiosorum iuxta vigentem disciplinam", in *C.p.R.* LXIII(1982), 3-21 e LXIV(1983), 124-141을 Iannone, "Potestà del Capitolo generale", 230-231 재인용.

104) 같은 글, 231. 1917년 법전 제2332조에서 회의가 사법권까지는 아니지만, 소송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Ángel Marzoa, "Delitos contra la autoridad y la libertad de la Iglesia",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V/1,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505-506.

105) 즉, 총회 혹은 관구회의는 교회법 제1315조 및 제1319조의 규범과 고유법 법률의 추가 규정에 따라 형법을 규정할 수 있다. Velasio De Paolis·Davide Cito, *Le sanzioni nella Chiesa(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Libro VI),* (Roma, Urbaniana University Press, 2008 (2)), 136. 한편 총회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형법 혹은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해 발령된 교회의 법에 어긋나는 형법도 자기 관할 범위 안에서 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과 같은 특별한 법은 제정할 수 없다. 『교회법전』 제1317조. 또한, 총회는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 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자동처벌의 형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전』 제1318조) Iannone, "Potestà del Capitolo generale", 243.

106) Josemaría Sanchis, "Ley y precepto penal",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V/1,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280.

### 4.2.3 행정권

법적 체계의 한계 안에서 규정된 수단들을 이용하면서 그 목적을 실행하는[107] 집행권은 사람을 이끌고 사물을 정돈하며 공적 목적을 이행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들을 제거하면서 법률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108] 총회에서도 이러한 권한이 행사된다. 수도회 총회는 규범들을 통해 집행권의 효력으로 수도회의 자연인과 법인을 구속할 수 있다.[109] 이것은 보편법과 회헌에 따라, 입법자에 의해 확장된 권한이다.[110] 이 집행권은 총회 안에서 입법권[111] 및 사법권[112]과 긴밀히 연관된다. 총회는 또한 일반적 범주의 개별 행정행위도 행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관면을 주는 것'[113]이다.[114] 총회가 개최 중에 선출된 이들의 사임을 수리하는 것도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총회의 집행권에 해당한다.[115]

## 4.3 선택적으로 총회의 권한에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 현안들

교회법 조항에서 회의 관할권자에게 유보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 권한이 평의회의 동의를 거친 총원장에게 속하는지 아니면 총회에 속하는지는 고유법에 달려있다. 이 중에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총회의 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 몇 가지 있다. 우

---

107) A. Ottaviani, *Institutiones Iuris Publici Ecclesiastici,* Città del Vaticano: 1968, vol. I, 94를 Iannone, "Potestà del Capitolo generale", 240에서 재인용.

108) Ibid., 240-241.

109) Ibid., 230.

110) 『교회법전』, 제596조 제3항.

111)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103. 집행권은 교령이나 명령 및 답서를 발령하는 행정입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가까운 개념으로 구분된다. 최인각, "교회행정행위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가톨릭신학』 13(2008), 116. 총회가 행사하는 집행권은 행정입법이 주가 될 것이다. 다만 교회문헌에 총회의 행정처분에 가까운 행위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는 총회가 정규 수련기 동안에 수련자 양성에 유익할 수 있는 특정 공부를 허용하거나 명령할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금지할 수도 있는 것에서 제시된다. 『쇄신의 문제』 29항.

112) 쟁송이든 형벌의 부과든 사법권이 총회에서 효과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는 이 집행에서 입법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 Iannone, "Potestà del Capitolo generale", 242-243.

113) 관면은 교회법전의 일반규범 제4장에서 개별행정행위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인 개별행정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법전』 제85-93조.

114) 데빠올리스는 총회에서 제정된 모든 제도에 관한 규정, 회(會)의 구조, 통치에 관련된 것, 총회의 구성 혹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직무의 지명 등에 관한 문제라면 이 관면은 총회에 유보되어야 하고 총회가 권한이 없다면 사도좌에 유보된다고 하였다.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228-229.

115) 최인각, 「교회행정행위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가톨릭신학』 13(2008, 겨울), 132.

선 제580조의 회의 '합병(aggregatio)'[116]에 관한 문제이다.[117] 회의 분회들을 폐쇄하는 것은 중립적으로 놓여있다.[118] 그러나 이 조항의 입법과정에서 그 권한을 명확히 총회에 부여했던 것으로 보아[119] 되도록 총회의 권한으로 회헌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제616조 제3항에 언급된 제613조의 자치(수도)원의 폐쇄 결정은 고유법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회의의 권한이다. 이때 지역 회의로는 안 되고 해당하는 전체 수도승 연합의 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120] 제581조에 제시된 회를 분회들로 분할하거나 새로운 분회들을 설립하고 결합하는 것, 그리고 달리 구획하는 것도 학자마다 차이를 보인다.[121] 수도자가 자치수도승원으로부터 다른 자치수도승원으로 전속(제684조 제3항)하는 문제에서 같은 회 또는 연합회나 연맹의 다른 자치수도승원으로 전속하는 절차는 관련 두 수도승원의 장상들의 동의와 함께 그 수도자를 받아들이는 수도승원 회의의 동의도 추가로 요구된다.[122]

---

116) 'aggregatio'는 한 회가 다른 회와 연계하여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두 회 간의 법적 관계나 영적인 교류 등 실제 의무도 발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157-158*)이라면, 현행법 제580조의 'aggregatio'에 대해 한국어 법전 번역인 '합병'은 본 의미를 적절하게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17) D.J. Andrés, El Derecho de los religiosos (Comentario al Código), 2a ed., Madrid 1984, 24를 Tomas Rincon-Perez, "Institutos de vida consagrada: normas comune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1421에서 재인용.

118) 『교회법전』 제585조.

119) 이 조항의 입법과정 중 1977년 초안에서 그 권한을 총회에 부여했지만, 입법자는 마지막 시점에 회를 분할 또는 달리 구획하는 것을 다루는 제581조에 설정된 기준을 따라가면서 '관할권자에게'라고 열어두었다. Perez, "Institutos de vida consagrada: normas comune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1430.

120) Domingo J. Andres, "Los Superiores y sus consejo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1542-1543.

121) 감바리(Gambari)는 이것이 회헌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관할권자에게 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Gambari, *Religious Life,* 45. 모리세이(Morrisey)는 이런 문제들을 총원장과 그의 평의회의 권한에 맡기는 수도회들의 예를 든다. G. Morrisey Francis, "Capitulo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1587. 안드레스(Andres)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 있을 수도 있고 총회의 공식적인 교령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Andres, "Los Superiores y sus consejo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1557).

122) 여기서 남겨진 공동체 회의의 동의가 언급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데빠올리스는 만약 회의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전속하는 회원 수도원의 회의에서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것은 수도승원을 떠나는 수도자의 권리와 교회법 체계가 인정하는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법은 두 회의 또는 두 평의회의 동의와 같은 추가적인 결정과 설명을 부과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것

그 밖에 총회의 권한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은 양성 지침을 수립하는 것, 양성을 돌볼 학교나 국내 국제 센터를 설립하거나 장려하는 것(제661조); 교황청에 면속 허가를 요청하는 것(제591조); 복음적 권고의 준수 방법을 정하는 것(제598조 제1항); 다음 총회의 구성 및 권한 범위를 정하는 것(제638조 제2항), 경제 지원과 함께 전체 회의 주도와 활동에 모든 관구의 참여 방식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123]

## 5. 수도회들의 고유법에 나타난 총회 권한의 특징

2020년 10월 기준 한국여자장상연합회에 가입된 수녀회는 108개이고, 한국남자장상협의회에 가입된 수도회는 41개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들 수도회 중 일부 회의 고유법에 나타난 '총회의 권한'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124]

### 5.1 성좌설립수도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선거권[125] 심사권(통제권)[126]이 확장되었다.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는 관구 설립 및 폐쇄의 권한을 총회에도 두었다.[127] 작은형제회는 식별권[128]과 입법권[129] 및 의결권 규정이 구체적이다.[130] 샬트르성바오로수도회는 대표권과

---

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555.

123) 『쇄신의 문제』 29항; Francis G. Morrisey, "Capitulo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1588.

124) 그러나 제631조 제1항에 따라 총원장을 선출하고, 제출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것과 규범을 제정하고 반포하는 총회 과제에 따른 권한들은 수도회들이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특이성이 없다면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만 회마다 그밖에 고유하게 규정한 총회의 권한이 있다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 특징만을 다뤄보고자 한다.

125) 투병 중인 투표권자의 권한까지 배려하고 선출자의 당선 수락을 강제한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회칙』, 2001, 제212조, 제215조.

126) 행정부와 각 업무 분야 책임자들이 모두 총회에서 업무를 보고하고 검토와 평가를 받게 한다. 총회 결정과 규범이 계속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과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실천 여부를 평가한다. 회의 전반적 상태, 규율, 재무 관리 등을 평가하고, 중대한 일, 제안을 토의 의결한다. 그 밖의 권한으로 지구나 관구의 설립 혹은 폐지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Ibid., 제208조, 제209-211조, 제218조, 제221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회헌』, 제97조.

127) 이 권한을 통상적 방법으로는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 의해, 특별한 방식으로는 총회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회헌 회칙』, 2017. 제135조.

128) 총회가 회의 유산과 생활을 연구하고 수도회의 활동 양식들과 증거의 정도에 관하여 그리고 현시대와 회의 복음화의 요청에 응답하는지를 검토하며 사도직을 촉진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들과 양식들을

선거권을 잘 조합하여 설정하였고 심사권(통제권)도 적절하게 규정하였다.[131]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는 재산 관리에 관해 총회의 심사권(통제권)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132] 글라렛선교수도회는 총회의 심사권(통제권) 규정이 있고 대표권을 총회 구성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선거권도 확장하였다.[133] 사랑의 선교 수사회는 총회의 심사권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천거 제도[134]를 두어 선거권을 확장하였다.[135]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총회의 선거권과 행정권을 보장한다.[136] 아우구스티노수도회는 선거권을 확장하였다.[137] 마리아회에서는 제안권, 식별권, 의결권, 행정권, 심사권(통제권) 및 임시총회의 권한 제한도 볼 수 있다.[138]. 성녀 글라라의 가난한 자매회는 봉쇄 회로서 총회는 원장의

---

설정한다. 작은형제회, 『작은 형제들의 수도규칙·회헌·총규정』, 2015, 회헌 5장 제112조, 7장 제188조.

129) 수도규칙을 새로운 시대에 적응시키고 해석하는 것과 회헌을 설명하는 해석과 총규정의 유권적 해석도 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회헌에 관한 총참사회나 총평의회의 행정상의 해석을 다음 총회까지 유효하도록 인준하는 권한과 총봉사자가 공포한 법령이 총회 이후까지 효력을 갖도록 추인하는 권한도 총회에 있다. Ibid., 회헌 1장 제10조, 제15조, 회헌 7장 제197조.

130) 회의 기구 사이의 재정 지원 형태와 방법, 총평의원들의 수와 선출 방법, 부채를 지거나 재산 양도 및 특별지출의 한도 설정을 총회가 정한다. 총회 중에 직책 사퇴를 수리할 수 있는 총회의 집행권의 행사도 규정하였다. 그 밖에 총회나 관구회의가 영속적 양성 계획을 작성하는 권한을 갖는다. Ibid., 회헌 5장 제72조, 제85조, 7장 제138조, 제149조, 제251조.

131) 총회의 대표권과 선출권을 교회론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며 한껏 확장하고 있다. 또한, 총회 위원이 된 이들의 대표권은 그들을 지명한 회원들을 위해 행사하는 대표권이 아니기에 자유롭고 양심적으로 발언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총회에서 총원장이 수도회의 수도적 또는 사도적 상황에 관해 보고하고 총경리의 회계 보고서가 심사된다. 샬트르성바오로수도회, 『생명의 책과 회칙』, 1988, 제74조, 제81조, 제92조, 제102조.

132) 재산 관리에 관한 지침을 내리며, 총본부의 재정적인 운영을 심사하는 것으로 입법권, 집행권 그리고 심사권을 갖는다.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회헌과 법규』, 1993, 제158조.

133) 총원장과 총평의회가 자신들의 결정을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총회의 대표권을 위해 공동체들의 인원수 구성과 사법적 지위 사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당선된 총원장의 수락 거부를 총회가 거부할 권한이 있고 총회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당선자들의 수락 거부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한다. 글라렛선교수도회, 『규칙』, 제286조, 제288조, 제513조, 제514조.

134) 천거 제도는 교회법적 장애가 있지만, 더 적임자라고 여기는 이를 선거구가 투표한 후 관할권자에게 천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회법전』 제180조.

135) 총회는 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하고, 총회가 취임 거부를 수락하지 않는 한 피선된 자는 선거 결과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천거를 통해 피선거권의 장애를 제거한다. 사랑의 선교 수사회, 『회헌과 규칙서』, 제17.1조, 제17.7조, 제17.9조. 중요 업무 논의, 제출된 안건들의 수렴 혹은 거부 및 사도직 방침을 총회가 검토한다. Ibid., 제17.14조.

136) 선거에서 고유법에 정한 장애가 있는 이들에 대한 관면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회칙』, 2009, 106조.

137) 총회에서 피선거권자들이 선거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총회에서 선출된 이는 총회 중에는 총회 의장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만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우구스티노수도회, 『184차 정기총회 개정판』, 2013, 289조.

통치 행위를 위해 '동의'[139]하고 '자문'[140]하는 권한으로 일반 수도회들의 평의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총회가 또한 회원들의 화해의 기회를 도모하는 간접적인 사법적 권한도 행사한다.[141]

## 5.2 교구설립수도회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는 총회의 의결권과 심사권(통제권)을 규정한다.[142] 성가소비녀회는 입법권의 구체적 규정이 있다.[143] 총회의 의결권과 집행권 및 심사권(통제권)이 규정되었다.[144] 예수성심시녀회에서 총회의 식별권이 분명하게 규정되고[145] 심사권과 통제권도 확보되며[146] 의결권과 그밖의 권한들도 갖는다[147]. 한국외방선교수녀회는

---

138) 총회는 생활 규칙의 수정 및 변경을 성좌에 제안할 수 있고, 회가 수행해온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회 전체의 생활과 사명을 검토한다. 총회는 최고 권위로 수도회의 정책과 목표를 결정하고 단위체에 그것의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총회는 경제 정책과 상황을 평가하고 지난 총회의 결의 사항 적용을 검토하며 재정 정책, 시행 및 지출을 평가한다. 세계 총회는 선출권, 입법의 권한, 본회 전체의 정책 및 목표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권한도 종합적으로 갖는다. 하지만 임시총회는 소집 이유에 해당하는 문제만 다루도록 한다. 마리아회, 『회헌』, 1983, 제2.14조, 제2.15조, 제7.23조, 제7.24조, 제7.25조, 제93조, 제98조.

139) 성녀 글라라의 가난한 자매회, 『수도규칙과 회헌』, 2003, 제20조 제3항, 제51조 제2항, 제54조 제3항, 제67조 제2항, 제158조 제4항, 제159조 제2항, 제200조, 제210조, 제258조, 제67조 제3항, 제74조 제2항, 제79조 제2항, 제85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90조 제1항.

140) Ibid., 제100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141) Ibid., 제80조 제2항.

142) 총회는 중대한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일과 총원장이 총참사회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의 지난 총회 결정사항의 이행 정도를 심사한다.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생활규범』, 1990, 제708조.

143) 회칙의 유권 해석과 회헌의 일반 해석의 권한을 총회에 둔다. 성가소비녀회, 『성가의 빛』, 제153조. "유권적 해석이 법률의 형태로 표시된 것은 법률 자체와 동일한 효력"(『교회법전』 제16조)을 갖기에 총회는 유권적 해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총회는 입법권을 가지므로 회칙의 해석 권한 또한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V. De Paolis·Andrea D'Auria, 『일반규범』, 김효석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7), 149.

144) 총회는 상정된 안건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의하며 행정의 사안을 결정하여 총원장에게 의무 지운다. 총원장이 임기 중 수도회 운영, 현황, 활동 및 재정 상황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감사 위원 2명을 선출하여 행정감사를 받는다. 총회는 총평의원에게 임무를 위임하는 규정으로 간접 집행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 밖에 지부의 설립과 폐쇄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성가소비녀회, 『성가의 빛』, 제96-1조, 제96-2조, 제101조, 제108-1조, 제114-142조.

145) 총회는 설립자의 정신과 수도회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고 모든 활동을 복음에 비추어 식별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길과 방법을 모색하여 회의 영성과 사명을 재확인한다. 예수성심시녀회 『회헌(시안)』, 제143조, 제124조.

146) 총원장은 회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총관리국장은 재정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하여

총회에 식별권과 입법권을 확보하고 의결권, 심사권(통제권) 및 선거권의 비중을 높였다.[148]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에서 총회는 식별권, 심사권(통제권), 의결권, 입법권 및 그 밖의 권한을 갖는다.[149]

### 5.3 회들의 고유법에 관한 평가

앞서 다룬 수도회들에 나타난 총회의 여러 권한에 대해 정리하면 우선 대표권은 성좌설립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 글라렛선교수도회, 사랑의 선교 수사회에만 규정되어 있다.[150] 세습자산과 관련된 식별의 권한은 성좌설립 작은형제회, 교구설립 예수성심시녀회, 한국외방선교수녀회에 규정되어 있다. 사도직과 통치 및 생활에 관한 식별은 성좌설립 작은형제회와 마리아회에 규정되어 있다. 수도회의 영성, 양성, 사도직, 재정 상황에 관한 식별은 교구설립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가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수도회의 총회가 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적절하게 심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보

---

감사받으며 감사위원은 수도회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수도생활 전반에 걸친 평가 및 새로운 방안 모색 및 회의 재정과 경제적 상황을 검토한다. Ibid., 제125조, 제143조, 제166조, 제169조.

147) 총원장이 총회의 의향과 결정사항들을 실행해야 한다. 그밖에 관구의 통합을 총회에서 결정하고, 관구 설립, 분할, 합병 및 폐지의 결정 권한이 총회에 맡겨진다. Ibid., 제143조, 제116-117조, 제160조.

148) 설립자의 정신을 재발견하는 식별의 권한을 총회에 구체적으로 부과한다. 총회는 최고의 입법과 의결의 기구로도 정의되고 총원장이 평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결정한다. 총회에서 제정한 것이나 결정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서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의 시간이 모자라면 추후 의결 방법을 논의한다. 회의 생활양식을 검토, 평가하고 계획하며 총원장은 평의회에서 서명한 회기 동안의 운영, 회원 현황, 국내외 사도직 활동, 면학, 양성 등 수녀회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활동 전반의 내용을 보고하고 재무담당 수녀는 재정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한다. 또한, 선거 후 당선 수락을 권고한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회헌과 회칙』, 제117조, 제118조, 제118-2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 제126-5조.

149) 총회는 수도회의 영성, 양성, 사도직, 재정 상황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더욱더 적절하게 조정한다. 전기(前期)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실행되었는지 심의하고 평가한다. 또한, 총회는 회원의 현황, 영적·사도적 생활과 양성 및 재정 관리 상황에 관한 총원장의 보고서와 임기 동안의 수도회 전반적 운영에 관한 보고서 및 총재무담당으로부터 회의 재정 상황을 보고 받는다. 한편 총회는 총원장이 총평의회의 동의 없이, 수도원장이 총원장의 허락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각 수도원이 총원에 지불하여야 할 기금 분담액을 결정한다. 회헌을 시대에 적응시키고 해석하는 입법권도 있다. 그밖에 수도원이나 지구, 관구의 설립 혹은 폐지를 결정하는 권한도 총회에 부여한다.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 『회헌과 회칙』, 2011, 제87조, 제94조, 제94.1조, 제119조, 제131조.

150) 샬트르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는 총회와 총회 위원의 권위 그리고 총회를 통해 선출된 총원장의 권위를 높이고 있다. 글라렛선교수도회는 공동체들의 인원수 구성과 사법적 지위 사이의 조화를 통해 총회의 대표권을 고양한다.

인다. 그 가운데 심사와 통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회들은 교구설립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가소비녀회이다.[151] 교구설립회들은 심사권(통제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의결권은 대부분 수도회의 총회에 적절히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152]

회들이 선거권을 확장하는 규정들은 다양하였는데[153] 성좌설립수도회에 국한된다. 회원들의 총회에 대한 제안권은 모든 회에 보장된다. 한편 총회 자체가 제안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성좌설립 마리아회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회는 생활 규칙의 수정 및 변경을 성좌에 제안하고 있다.

입법권 역시 회의 총회마다 공통으로 갖는 권한이다. 특별히 성좌설립 작은형제회와 교구설립 성가소비녀회,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가 입법권을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 드러난다. 사법권의 행사는 대부분의 회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성좌설립 성녀 글라라의 가난한 자매회에서 간접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권을 규정하는 내용 또한 다양하다.[154] 그 밖에 봉쇄수도회인 성좌설립 성녀 글라라의 가난한 자매회는 총회가 원장

151)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는 회원의 현황, 영적·사도적 생활과 양성 및 재정 관리 상황에 대해 심사한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는 생활양식을 검토, 평가, 계획하며 총원장은 평의회에서 서명한 회기 동안의 운영, 회원 현황, 국내외 사도직 활동, 면학, 양성 등을 구체화하고 재무담당은 재정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성가소비녀회는 회의 운영, 현황, 활동 및 재정 상황을 언급하고 총회에서 감사 위원 2명을 선출하여 행정감사를 하는 것을 규정한다.

152) 교구설립 한국외방선교수녀회에서 총회는 최고의 입법과 의결 기구로 정의되고 실제로 의결권이 주로 행사된다. 그 밖의 중대 사안들에 관해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와 사랑의 선교 수사회, 교구설립 한국외방선교수녀회와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에 그리고 재정 상태에 관해서는 성좌설립 작은형제회, 교구설립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에서 의결권이 행사된다. 수도회의 정책과 목표 그리고 사도직 방침 등을 의결하는 회는 성좌설립 사랑의 선교 수사회와 마리아회이다. 또한, 일부 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권을 강화하는데, 다음 총회에서 이전 총회의 의결 사항을 평가하는 성좌설립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와 교구설립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그리고 이 의결 사항을 이행하도록 총원장에게 의무 지우는 교구설립 성가소비녀회와 예수성심시녀회가 그 예이다. 더 나아가 교구설립 회는 시간이 모자라면 추후 의결 방법을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총회에서 의결권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153) 당선 수락을 강제(성좌설립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글라렛선교수도회, 사랑의 선교 수사회,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등), 선거 전 피선거권 포기의 제한(성좌설립 아우구스티노수도회), 피선거권자의 장애 관면과 천거(성좌설립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사랑의 선교 수사회), 투병 중인 회원의 투표권 보장(성좌설립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총회에서 선출된 이는 총회에서 사임(성좌설립 아우구스티노수도회) 등의 규정이 있다.

154) 총회가 총평의원에게 임무를 위임하는 규정(교구설립 성가소비녀회)과 총회나 관구회의가 영속적 양성 계획을 작성하는 것과 총회 중에 직책 사퇴를 수리할 수 있는 규정(성좌설립 작은형제회),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성좌설립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과 선거에서 고유법에 정한 장애가 있는 이들에 대한 관면을 줄 수 있는 것(성좌설립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으로 총회의

의 여러 통치 행위에 자문과 동의하는 권한으로 행정권에 참여한다. 선택적으로 총회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들은 주로 교구설립수도회에서 발견됐다.[155]

지금까지 회들에서 총회가 갖는 권한을 살펴보았는데, 특이하게도 성좌설립 마리아회는 임시총회에서 소집 이유에 해당하는 문제만 다루도록 한 점에서, 총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도회들의 총회에 담긴 권한들은 입법, 의결, 선거, 심사 및 통제의 권한으로 적절하게 구체화 되어 있다. 총회의 주요 과제이고 권한인 세습자산과 현재의 회의 삶과 활동에 관한 식별권의 규정은 일부 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른 일부 권한들 역시 특정 권한에 분포된 것도 확인되었다. 선서권과 입법권은 주로 성좌설립 수도회들에서 확장되어있고 심사권(통제권)은 주로 교구설립수도회들이 적절히 보장하고 있다. 보편법이 회에 맡긴 총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회들은 자신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 5.4 고유법 입법을 위한 제언

앞서 보았듯이 총회의 권한 범위와 내용은 고유법의 회헌이나 근본규범에 규정되어 안정성과 일관성 및 지속성을 보장받아야 통치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야 할 권한들 가운데 먼저 대표권은 공평하게 모든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와 공평한 인원 구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래야 회원들의 신뢰[156]를 기반으로 총회의 권한인 절대성에 타당성 및 대표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성을 위해 총회 위원은 회의 카리스마를 잘 알고 그것을 식별하고 보호하며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일치를 도모하고 기도로 조성된 친교의 정신이 갖춰진 이라야 한다. 이는 총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세습자산을 확인하고 식별하며 쇄신을 촉구하여 회를 방향 짓는 식별권과 의결권을 자연스럽게 보장해 준다.[157] 행정부의 통치와 사도직도 이러한 세습자산과 카리스마에 관한

---

집행권을 확장하였다.

155) 예를 들면, 지구나 관구의 설립 혹은 폐지(성좌설립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와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지부의 설립과 폐쇄(교구설립 성가소비녀회), 관구의 통합, 설립, 분할, 합병 및 폐지(교구설립 예수성심시녀회), 수도원이나 지구, 관구의 설립 혹은 폐지(교구설립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 등이다.

156) 17세기 수도회들의 중앙집권화로 총회에 당연직 위주로 참석하여 총회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초래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43.

157) 『수도생활교령』 4항. 설립자의 카리스마가 설립 당시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관할권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시대에 다시 제시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다.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식별과 쇄신의 관점을 통해 적절하게 심사되고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표권, 식별권, 심사권, 통제권 및 의결권은 상호관계와 역학관계 안에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기에 그 규정들도 회의 성격에 따라 조화롭게 설정될 수 있다. 선거의 권위는 정실과 남용이 스며들지 않는 공정성을 전제로 하여[158] 앞에서 다루었던 여러 수도회의 규정의 예들을 고려하면서 확장될 수 있다. 한편 총회가 대표권을 신장하고 "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 안에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되도록 구성"[159]되기 위해 사법권에 준하는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160] 한편 총회의 제안권은 회원들의 제안에 대해 수용과 결정 및 이행의 의무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정할지 구체화하여 안건들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에 일관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결론

총회는 수도회의 전통 속에서 장상을 선출하고 중대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며 삶을 점검하고 회원들의 용서와 화해를 이끄는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회의가 총회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고, 통치의 권한을 추가하게 되면서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심사와 통제의 권한도 갖게 되었다. 이는 총회가 자체적으로 합의체적 최고 권한을 갖는 의의뿐만아니라 장상이 중앙 집권적 구조로 회원들 개개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위험과 회원들을 통한 총회 결정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위험을 제거한다.[161]

뿐만아니라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열매이고 새 교회법을 통한 소득으로 회원들이 회의 통치와 방향에 대해 수동적 객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책임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수도 공동체에 대한 변화된 관점에 따라 총회는 대표권, 식별권, 의결권, 통제권(심사권), 선거권, 제안권뿐만 아니라 정규 통치권(입법, 사법, 집행)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련의 변화 속에, 총회가 교회 권위로부터 독보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도구로 활용된

---

*Chiesa*, 210.

158) 『교회법전』 제626조 제1항.

159) 『교회법전』 제631조 제1항.

160) 형제적 일치가 세습자산을 식별하고 사도직의 방향을 의결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현조, 「수도회의 '형제적 공동생활' · '카리스마와 세습자산'·'사도직'에 관한 교회 문헌과 교회법적 체계 안에서 상호관계」, 『가톨릭신학』 37(2020, 겨울), 63-104.

161)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9항.

이유는 무엇보다 회를 대표하여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회의 세습자산을 확인하고 쇄신하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162]이라면 총회는 회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에 총회의 권한에 관한 이해와 적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회의 역사 안에서 교황들이 수도회의 쇄신을 위해 총회를 활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총회가 수도회를 대표하여 회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쇄신하며 미래 방향을 정하는 최고의 권한 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총회의 주된 권한을 중심으로 다른 다양한 권한들이 회의 성격에 따라 상호 보완되면서 균등하고 구체적으로 회헌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쉽게 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총회의 권한들을 연구하고 밝혔다.

162) Ibid., 48항.

# 참고 문헌

## 1. 공의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수도 생활 교령』(Perfectae Caritati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_____, 헌장『교회 헌장』(Lumen Gentium, 196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2. 교황문헌

바오로 6세, 교서『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 196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_____, 권고『복음의 증거』(Evangelica Testificatio, 197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요한 바오로 2세, 권고『축성 생활』(Vita Consecrata, 199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프란치스코, 권고『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Ioannes Paulus II, Constitutio apostolica, “Universi Domini Gregis”, Feb. 22, 1996.

## 3. 교황청문헌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지침『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Per Vino Nuovo Otri Nuovi, 201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9.

수도회성, 훈령『쇄신의 문제』(Renovationis Causam, 196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Congregatio Episcoporum et Regularium, “Normae secundum quas S. Congregatio Episcoporum et Regularium procedere solet in approbandis novis institutis votorum simplicium”, Typis S.C. de Propaganda Fide, Roma, 1901.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s canonici recognoscendo, *Communicationes* v.12, 1980.

SCRIS, Relazione periodica alla Santa Sede, en “Informationes SCRIS” 14(1988), 179-182: cartas del 2.1.88 a los Superiores generales de los IVC y SVA.

## 4. 수도회 고유법

글라렛선교수도회,『규칙』, 1999.

_____,『회헌』, 2000.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회헌과 법규』, 1993.

마리아회, 『생활규칙(회헌)』, 1981.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 『회헌과 회칙』, 2011.
사랑의 선교 수사회, 『회헌과 규칙서』, 2003.
샬트르성바오로수도회, 『생명의 책과 회칙』, 1988.
성가소비녀회, 『성가의 빛』, 2013.
성녀글라라의 가난한 자매회, 『수도규칙과 회헌』, 2003.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생활규범』, 1990.
아우구스티노수도회, 『회헌』, 2013.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회헌』, 2001.
_____, 『회칙』, 2001.
예수성심 시녀회, 『회헌(시안)』, 2020.
_____, 『회칙(시안)』, 2020.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회헌 회칙』, 2017.
작은형제회, 『작은 형제들의 수도규칙·회헌·총규정』, 2015.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회칙』, 200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회헌과 회칙』, 1985.
"Constitutiones generales Narbonenses (a. 1260), Rubr. Xc XI", in BONAVENIURAE *(S.), Opera Omnia, vol. VIII,* Ad Claras Aquas, cd. PP. Collegii a S. Bonaventura, 1898.
Harding, Stephanus, "Carta Caritatis", in: *Constitutiones Sacri Ordinis Cisterciensis*,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34.

## 5. 단행본

도밍고 안드레스 구티에레스, 『봉헌축성생활회』 제1권, 한영만 역,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사바레세 루이지, 『가톨릭 교회법전 입문』, 김우중·안세환·한영만 역, 가톨릭대학교 교회법연구소, 2018(2).
스트라렌 H.V. 외, 현석호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해설총서』 5, 성바오로출판사, 1993.
정진석, 『교회법 해설』 2,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20.
De Paolis, V.·D'Auria, A. , 『일반규범』, 김효석 역,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Andrés D.J., *El Derecho de los religiosos (Comentario al Código)*, 2a ed., Madrid 1984.

_____, ed., *Leges Ecclesiae*, vol. VII, Roma: EDIURCLA, 1994.

_____, "Los Superiores y sus consejos",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1508-1584.

Beyer J.,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Àncora, Milano, 1989.

Bouscaren T and O'Connor J., eds. *Canon Law Digest*, v. 8, Chicago: CLSA, 1991.

De Paolis, V.,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ed., Mosca, Vincenzo,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De Paolis, V./Cito D., *Le Sanzioni nella Chiesa(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Libro VI)*, Roma: Urbaniana University Press, 2008 2ed.

Etzi, P., *Attività di governo e prassi della consultazione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una lettura dei canoni 627 e 12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Pontificium Athenaeum Antonianum, 2001.

Gambari E., *I Religiosi nel Codice*, Milano: Editrice Àncora,, 1986.

_____, *Religious Life*, Boston: the Daughters of St. Paul, 1986.

Hite J./Sharon H.·Daniel W., *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85.

Iannone, F., *IL Capitolo generale(Saggio Storico-Giuridico)*, Roma: Edizioni Dehoniane, 1998.

Lippini, P., La vita quotidiana di un convento medievale(Gli ambienti, le regole, l'orario e le mansioni dei Frati Domenicani del tredicesimo secolo), Bologna: Edizioni Studio Domenicano, 2003.

Ladeuze, P., *Etude sur le cénobitisme pakhomien, pendant le IV siècle et la première moitié du V*, Paris: Paulin Laudeuze, 2018.

Marzoa, Á., "Delitos contra la autoridad y la libertad de la Iglesia",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V/1,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504-523.

Miñambres J., “Elección”,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975-1020.

Morrisey G. F., omi. “Capitulo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1585-1614, 1772-1800.

Nava, P.L., *L’evento capitolare. Dall’indizione per la convocazione alla ricezione*, Roma: Centro Studi USMI, 1997.

Otaduy J., “Leyes eclesiástica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255-470.

Ottaviani A. *Institutiones Iuris Publici Ecclesiastici*, vol. I. Città del Vaticano, 1968,

Rincon-Perez T., “Institutos de vida consagrada: normas comunes”,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I/2,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1387-1507.

Sanna, A., *Il capitolo conventuale,* Roma, Curia generale OFMConv., 1978.

Sanchis, J., “Ley y precepto penal”, in *Comentario Exegético al Código de Derecho Canónico* vol. IV/1, eds. Marzoa, Á./Miras, J./Todríguez-Ocaña, R., Pamplona: EUNSA, 2002[3], 258-281.

Scarvaglieri, G., *Il Capitolo generale(Preparazione Celebrazione Attuazione)*, Milano, Àcora, 2002.

## 6. 간행물

김현조,「수도회의 ‘형제적 공동생활’ · ‘카리스마와 세습자산’ · ‘사도직’에 관한 교회 문헌과 교회법적 체계 안에서 상호관계」,『가톨릭신학』37(2020, 겨울), 63-104.

최인각,「교회행정행위에 대한 이해와 적용」,『가톨릭신학』13(2008, 겨울), 107-182.

카스퍼 발터,「친교인 교회(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친교 개념에 대한 성찰)」, 주락권 역,『신학전망』, 164(2009, 3), 172-194.

Alonso, S.M., “Qué es un Capitulo general”, in *Vida Religiosa* 50-31(1981) 74-80.

Ara, S., “Los capitulos provinciales de renovaciòn y el derecho del los Hermanos Menores Capuchinos”, in *Estudios franciscanos* 77(1976) 253-267.

Berlière, U., “le Chapitres généreaux de l’ordre de Saint Benoit avant le IV Concile de Latran (1215)”, in *Revue Bénedectine* 8(1981) 255-264.

_____, “Les origines de Citeaux”, in *R.H.E.* v. I (1900).

Codorniu, M., “Regolamenti dei capitoli generali”, in *Vita Consacrata* 15 (1979/3) 207-223.

Gutierrez, L., “De natura juridica Capituli generalis specialis religiosorum”, in *Commentarium pro Religiosis* 48(1967) 241-258.

Iannone, F., “Potestà del Capitolo generale (cann. 596 e 631, §1)”, in *CpR* (1987), 77-97, 233-244.

Ochoa, X., “Ordinatio Tribunalium Religiosorum iuxta vigentem disciplinam”, in *C.p.R.* LXIII(1982), 3-21. LXIV(1983), 124-141.

Peinador, A., “Capitula et Consilia in regimine religiosorum. Observationes pastorales”, in *Commentarium pro Religiosis* 46(1965) 345-355.

## 7. 사전류/신문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연구소, 『라틴-한글 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Lesage, G., “Capitolo”, in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v. II, col. 167-168.

Misserey, L. R., “Chapitres de Religieux”, in *Dictionnaire de droit canonique*, v. III, coll. 595-610.

*L'Osservatore Romano* 116 (1976) 195 (25.8) 2.

초 록

# 수도회 ‘총회의 권한’에 관한 연구

김현조

본 연구는 수도회 ‘총회의 권한’에 관해 올바른 이해와 입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보편법은 총회의 권한을 각 수도회의 회헌에 규정하도록 열어두었다. 이에 수도회들은 총회의 권한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수도회의 성격에 맞도록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입법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역사 속에 수도회들의 총회 권한의 배경과 발전의 추이를 간단히 살폈다. 이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보편법 입법 과정에서 교회와 입법자의 총회 권한에 관한 입법 취지를 연구하였으며 이 입법 이후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총회 권한에 포함된 대표권, 식별권, 선거권, 의결권, 통제권(심사권), 제안권과 통치권(입법, 사법, 집행)을 세분하여 다루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권한의 종류에 따라 현재 수도회들이 고유법으로 규정하는 실태를 분석하면서 실제적인 면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수도회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활용하면서 추구하였던 목적과 총회의 권한의 변화 등에 관한 역사적 의미가 파악되었고 교회와 교회 권위들이 총회에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입법 취지가 밝혀졌다. 즉 총회의 권한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회를 대표하는 권한과 회의 세습자산에 대한 식별의 권한이다. 이에 따라 다른 권한들이 상호 보완하여 회를 올바로 이끌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실제 수도회들은 총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된 권한인 식별권을 규정한 수도회는 소수이며 일부 권한으로 치우쳐 규정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총회의 권한들은 보편법이 회들에게 열어둔 부분이기에 회의 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의 권한들이 균등하게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회헌이나 근본규범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총회

마다 그 권한이 행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총회는 불안정성과 불공정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면서 총회 권한들을 각 회들의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입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과물로 제공했다.

**주제어 :** 총회의 권한, 식별, 세습자산, 입법, 고유법, 회헌

# A Study on the 'Power of the General Chapter' of the religious institute

Kim, Hyun Cho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correct understanding and legislative functions of the religious institute's 'power of the General Chapter'. The universal law entrusts the powers of the General Chapter to the constitutions of each religious institute. Therefore, religious institutes should know what the powers of the General Chapter are, and what they mean. Through this understanding, the powers of the General Chapter must be appropriately legislated and applied to suit the nature of the religious institute. The study first explain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power of the General Chapter of the religious institute. Subsequently, in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in the process of legislating the universal law,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legislators was studied, to elucidate the power of the General Chapter. In addition, through the opinions of scholars following this legislation,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power of representation, discrimination, election, deliberation, control (examination), proposal and governing authorities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includes in the power of the General Chapter. Furthermore, the practical aspect was also confirmed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that the current religious institutes stipulate in their proper laws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powers. This study illuminates the purpose that the religious institutes pursued while holding and using the General Chapter. Furthermore, the study

shows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change in the power of the General Chapter, and reveal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hurch and Popes that sought to empower the General Chapter. The study argues that, among the powers of the general Chapter, the power of representation and the power of discrimination on the patrimony of the institute should be central. Accordingly, different powers must be specifically defined so that each power can be complemented and the institutes properly were led. This study confirms that several institute properly prescribed the powers of the General Chapter. However, most of the institutes overlooked the main authority or stipulated some power in focus. Of course the powers of the General Chapter can be freely defined according to autonomy of the Institutes, because Universal Law left it open. But if the powers of the General Chapter were not uniformly defined or specified, and were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r fundamental norms, and stability and continuity were not secured, the powers of the General Chapter may vary depending on the administration. This could expose the assembly to the risk of instability and injustice. In preparation for these issues, this study provides ancillary understanding for how constitutions could be revised, legislated and applied to the powers of the General Chapter.

**Key words**: Power of the General Chapter, power of discrimination, patrimony, legislation, proper law, constitutions

| | |
|---|---|
| 논문 투고일 | 2021년 3월 31일 |
| 논문 수정일 | 2021년 5월 10일 |
| 논문게재 확정일 | 2021년 5월 07일 |